
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맹성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3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7. 19.

발의자 : 맹성규 · 김병욱 · 김정호

민병덕 · 임오경 · 조오섭

고용진 · 김민철 · 이학영

최인호 · 오영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에서는 고정밀 · 고해상 · 3차원 좌표가 포함되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나,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공간정보 · 위치정보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량, 드론, 도심항공교통(UAM) 등 미래 모빌리티 및 스마트시티와 같은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상당수 디지털 신산업 분야 기업들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지 못해, 신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.

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더 해 학술연구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고,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34조제2항 및 제

35조의2제1항).
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2항 중 “「공간정보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,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가. 「민법」, 「상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
- 나.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
2.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

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o]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	<p><u>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u></p> <p><u>가. 「민법」, 「상법」 또는</u> <u>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</u> <u>된 법인</u></p> <p><u>나.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</u> <u>사업자등록을 한 자</u></p>
③ · ④ (생 략)	<p><u>2.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</u> <u>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</u></p>
제35조의2(보안심사) ① 관리기 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p><u>제35조의2(보안심사) ①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다</u> <u>만,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</u> <u>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에 따</u> <u>른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</u> <u>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</u> <u>보안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</u></p>
1. · 2. (생 략) ② (생 략)	<p><u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② (현행과 같음)</u></p>